

## ●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-164호

「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6월 14일  
금융위원회 위원장

###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우대수수료를 적용 대상이 되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확대하여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조정(안 제6조의13)

- 1) 영세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조정함.
- 2) 중소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조정함.

#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**2017년 6월 26일 까지** 통합입법예고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중소금융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 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(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)
- 전자우편 : wndth@korea.kr
- 팩스 : 2100-2999

#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(전화 02-2100-2992, 팩스 2100-299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